

4. 공정거래조사 대응

공정거래조사는 예방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컴플라이언스와 연관시켜 생각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범위반 예방활동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조직인 경우에는 조사에 대해서도 크게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연관시킬 수도 있다. 공정거래조사는 신고에 의한 경우와 직권에 의한 경우가 있다.

4.1 신고의 경우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 이전에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 진행 중이었던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회사와 거래 상대방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분쟁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신고에 의한 조사를 예방하는 길이다.

일단 신고가 행해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개시하게 되면 초기에 관련 이슈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한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아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만약 회사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이를 빨리 원상회복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통해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안에 따라 신고 취하를 통해 사건을 종결 처리될 수 있도록 하거나 혹은 제재 수준을 낮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 내부적으로 아무리 검토해 보아도 불법이라고 볼 여지가 없고 거래상대방이 어깃장을 쓴 것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잘 정리해서 조사 담당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때에도 회사 측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담당자의 시각에서 조금이라도 애매하거나 의심이 가는 부분이 없도록 객관적인 증빙과 함께 논리적인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2 직권조사의 경우

신고인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외에는 모두 직권조사라고 부른다. 즉 조사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구체적인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공정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는 경우이다. 익명의 제보,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

직권조사의 경우 어느 정도 이를 예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이고, 다른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다. 업무보고로는 매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그 내용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것과, 국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 공개되는 것이 있다. 이런 자료들을 꾸준히 파악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직권조사의 대상이 되는 업종을 예상할 수 있고, 업종이 예상되면 어느 정도 조사대상이 되는 회사를 예상할 수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관련 회사에 대해 조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직권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4.3 조사에 대한 대응 방법

신고에 의한 조사에 대해서는 위에서 이미 어느 정도 대응방법까지 설명되어 있다. 다음은 신고와 직권 조사 모두에 공통된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나오는 경우 채널을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즉, 사안이 발생한 현업 부서에 조사 대응을 맡기게 되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잉반응을 보이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사안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가능하다. 현업 부서는 사실관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

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은 일단은 공정거래 자율준수부서에서 담당하되, 조사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자료작성, 진술 등은 현업에서 담당하게 된다. 가능하면 현업 담당자에 대한 관련 법규에 대해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대응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다. 이미 자료 관리와 관련하여 언급하였지만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일단 자료는 제대로 작성되고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작성과정에 보고자가 자신의 성과를 포장하기 위해 과장의 표현을 사용하거나 혹은 업무지시를 할 때에 최고경영자의 지시인 것처럼 묘사하여 자신의 일을 수월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후에 조사대상이 된 경우 이를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은 평소에 생산되지 않도록 제대로 교육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어떤 자료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된 경험이 있는 회사는 가능한 한 자료를 장기간 보관하려고 하지 않는다. 하지만 담합으로 오인 받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가 없어서 반증을 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담합 사실을 자진 신고하여 제재를 감면 받고자 할 때 자료가 없어 난감할 때도 있다.

이런 여러 이슈들을 고려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경우, 즉 조사공무원의 자료 요청이 있거나,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개시하게 되는 경우에 임직원들이 취해야 할 행동원칙 및 요령을 미리 규칙으로 정해 둘 필요가 있다.